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 - 246
----------	---------

제출연월일 : 2004. 5. 1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되어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 ▣ 변경사유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04.3.26) 개최 결과 장학금 지급 대상자 증가로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기금을 추가 지급하고자 함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 운용계획 변경 내용				2004년도말 현재액(A+B)
	수 입	지 출		증 감(B)	
		당 초	변 경		
1,127,126	77,772	74,500	93,100	△15,328	1,111,798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증가 : 18,600천원 (고등학생26, 대학생 3)

· 당초대상 130명 (중학생 40, 고등학생 80, 대학생 10) :74,000천원

· 변경대상 159명 (중학생 40, 고등학생 106, 대학생 13) :92,600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장학증서 제작) : 500천원

□ 관련계획서 : 불 임

저소득주민주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

1.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 (1) 기금명칭 : 파주시 저소득주민주녀 장학기금
- (2) 설치근거 : 파주시 저소득주민주녀장학기금설치조례
- (3) 설치목적 : 저소득층 주민주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고취
- (4) 설치년도 : 1992년 1월 11일 조례제정

나.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 운용 현황

(단위 : 천원)

2003년도발현재액(A)	2004년 운 용 계 획				2004년도말 현재액 (A + 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B)		
		당초	변경			
1,127,126	77,772	74,500	93,100	△15,328	1,111,798	

(2) 재원조성 :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3) 지원기준 : 1인당 ⇒ 중학생 : 200천원(상·하반기, 2회)

⇒ 고교생 : 300천원(상·하반기, 2회)

⇒ 대학교 입학생 : 1,000천원(상반기, 1회)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 및 대학교입학생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당 초	변 경	증 감	항 목	당 초	변 경	증 감	항 목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1,204,898	1,204,898		합 계	1,204,898			합 계	1,204,898	1,204,898			
· 전년도이월금	1,127,126	1,127,126		· 인 건 비				· 인 건 비					
· 기금전입금				· 물 건 비				· 물 건 비					
· 차 입 금				· 고유목적사업비				· 고유목적사업비	500	500			
· 읍자금회수				· 장 학 금				· 장 학 금	74,000	92,600	18,600		
- 원 금				· 융 자 금				· 융 자 금					
- 이 자				· 차입금상환				· 차입금상환					
· 이 자 수 입	77,772	77,772		- 원 금				- 원 금					
- 적립금이자	77,772	77,772		- 이 자				- 이 자					
- 융자금이자				· 이차보전및기타				· 이차보전및기타					
· 기타수입				· 다음년도이월금				· 다음년도이월금	1,130,398	1,111,798	△18,60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1,204,898	1,195,846	9052	
210 경상적세외수입				77,772	81,400	△3,628	
216 이자수입				77,772	81,400	△3,62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7,772	81,400	△3,628	기금적립금이자 1,127,126,000원×6.9% = 77,772
220 임시적세외수입				1,127,126	1,114,446	12,680	
222 순세계잉여금				1,127,126	1,114,446	12,680	
222-01 순세계잉여금				1,127,126	1,114,446	12,680	전년도이월금 = 1,127,126
224 전입금				-	-	-	
224-03 기금전입금				-	-	-	
세 입 합 계				1,204,898	1,195,846	9,052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2004년 당초계획(A)	2004년 변경계획(B)	증 감(B-A)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000	사회개발비		1,204,898	1,204,898					
	2300	사회보장비	1,204,898	1,204,898					
		2310	1,204,898	1,204,898					
		2312	1,204,898	1,204,898					
		100	74,500	93,100	18,600				
		120	74,500	93,100	18,600				
		201	500	500					
			500	500					
						01	일반수용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증서 제작		
							· 2,000원×250매		= 500
		301	74,000	92,600	18,600				
			74,000	92,600	18,600				
						02	장학금및학자금		
							장학금지급(국민기초수급자,농어민,저소득주민자녀)		92,600
							· 중학생 200,000원×80명		= 16,000
							· 고교생 300,000원×212명		= 63,600
							· 대학생 1,000,000원×13명		= 13,000
		400	1,130,398	1,111,798	△18,600				
		420	1,130,398	1,111,798	△18,600				
		706	1,130,398	1,111,798	△18,600				
			1,130,398	1,111,798	△18,600				
						03	적립금		
							기금적립금		= 1,111,798
		세	74,500	93,100	18,600				
		출							
		합							
		계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A-B)	
	계(A)	국고보조금	도비	시군비	이자수입	지방채	기타	계(B)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장학금	지방채상환		기타
설치년도 ~ 1997	458,347			400,000	58,347			18,200			18,200			440,147
1998	284,681			221,647	63,034			41,800			41,800			242,881
1999	271,144			200,000	71,144			74,100			74,100			197,044
2000	181,956			100,000	81,956			75,700			75,700			106,256
2001	179,914			100,000	79,914			69,600			69,600			110,314
2002	83,221			-	83,221			65,417			65,417			17,804
2003	85,225			-	85,225			72,545	445		72,100			12,680
2004	77,772			-	77,772			93,100	500		92,600			△15,328
계	1,622,260			1,021,647	600,613			510,462	945		509,517			1,142,454

4. 적립기금 운영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적립기금명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 년도	운용관서	재원의조달	적립액			2003년도 사 용 액	2003.12.31 현 재 액	기금보관상황 (은행명,금액)
						2002년도 까지	2003년도	계			
파주시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파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저소득층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 품행이 바른 중 고교생에게 장학금 을 지원하여 학습 의욕 고취	'92	사 회 복지과	기금전입금 및이자수입	1,114,446	85,225	1,199,671	72,545	1,127,126	· 농업금융채권 (800,000) · 신용환매채 (186,160) · 신용환매채 (30,000) · 정 기 적 금 (103,824) · 보 통 예 금 (7,14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변경안은 2004년 5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제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2004. 3. 26)개최 결과 장
학금 지급대상자 증가로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
학기금을 추가 지급하고자 함.

● 변경내용

(단위 : 천원)

2003년도말 현재액(A)	2004년도 운용계획 변경 내용				2004년도말 현재액(A+B)
	수 입	지 출		증감(B)	
		당 초	변 경		
1,127,126	77,772	74,500	93,100	△15,328	1,111,798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증가 : 18,600천원(고등학생 26, 대학생 3)

▪ 당초대상 130명(중학생 40, 고등학생 80, 대학생 10): 74,000천원

▪ 변경대상 159명(중학생 40, 고등학생 106, 대학생 13): 92,600천원

※ 고유목적사업비(장학증서 제작) : 500천원

3.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성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 고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A)			
계	1,021,647	600,613	-	1,622,260	510,462	1,111,798	
설치년도 ~1997년	400,000	58,347	-	458,347	18,200	440,147	
1998년도	221,647	63,034	-	284,681	41,800	242,881	
1999년도	200,000	71,144	-	271,144	74,100	197,044	
2000년도	100,000	81,956	-	181,956	75,700	106,256	
2001년도	100,000	79,914	-	179,914	69,600	110,314	
2002년도	-	83,221	-	83,221	65,417	17,804	
2003년도	-	85,225	-	85,225	72,545	12,680	
2004년도	-	77,772	-	77,772	93,100	△15,328	

4. 검토의견

- 동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영계획 중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사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생 및 대학교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조성된 기금임.
- 금번 동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4. 3. 26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장학금지급대상자가 증가하여 장학기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것임.
- 당초 대상인원이 130명(중학생 40, 고등학생 80명, 대학생 10명)에서 159명(중학생 40, 고등학생 106명, 대학생 13명)으로 29명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장학금 18,600천원의 추가 지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임.
- 한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추가 선발 확정된 29명의 자격요건을 확인한바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생 선발자격요건에 부합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지 방 자 치 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5. 기금의 설치·운용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3조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제3조 (자격)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중 직전학기의 재학중 교과목별 성취도 평점의 전과목 평균이 “미(3점)”이상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개정 2001. 6. 15, 2003. 1. 13)